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804-080001-14

선거 · 정치자금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안내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및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오니 주변에서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 정치자금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www.nec.go.kr

“정치인에게 금품 · 음식물을 받으면 **50 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

2008.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



일 러 두 기

이 예시는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한 길잡이로 삼고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 중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예시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집에 의하여도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3939번으로 문의하시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친절히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용어의 표기

- “후보자”는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하며, “정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합니다.
- “공직선거법” ⇒ “선거법” 또는 “법”으로 표기
- “정치자금법” ⇒ “정치자금법”으로 표기
- 선거법 제112조 제1항 ⇒ §112①으로 표기
- 정치자금법 제2조 ⇒ 정치자금법 §2로 표기

선거법상 주요제한 · 금지사항 적용기간

1.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관련

행 위 별	기 간
• 기부행위의 제한 · 금지(§12①)	언제든지
• 정당 · 후보자가 설립 · 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89②) •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93①)	2007. 10. 12 ~ 2008. 4. 9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 위원회위원, 동 · 리 · 반장이 선거사무장 등에 선임되어자 할 때 사직기한(§60②)	2008. 1. 10까지
• 정당 ·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기타 물품광고 금지 및 후보자와의 방송 · 신문 · 잡지 등에 광고출연금지(§93②) •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103⑤) • 국회의원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111)	2008. 1. 10 ~ 4. 9
• 후보자 ·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2008. 2. 9 ~ 4. 9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 · 인용보도 금지(§108①)	2008. 4. 3 ~ 4. 9 18:00

2.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 관련

행 위 별	기 간
• 당원단합 · 수련 · 연수 · 교육 등 당원집회 개최 제한 (§141)	개최장소와 고지 방법의 제한 개최금지 언제든지 2008. 3. 10 ~ 4. 9
• 정당 · 합당 · 개편 · 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 참석대상, 고지방법 등의 제한(§140)	2007. 12. 11 ~ 2008. 4. 9
• 정강 · 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137의 2)	방송연설횟수 제한 2008. 1. 1 ~ 3. 26
	방송연설금지 2008. 3. 27 ~ 4. 9
• 정강 · 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137)	광고횟수 제한 2008. 1. 10 ~ 3. 26
	광고금지 2008. 3. 27 ~ 4. 9
• 정강 · 정책홍보물과 정당기판지의 발행 · 배부제한 (§138, 139)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금지(§144)	2008. 3. 27 ~ 4. 9

3.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제한 · 금지행위 관련

행 위 별	기 간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86②)	2008. 2. 9 ~ 4. 9

I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0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 등록	2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2

02 사전선거운동

1. 사전선거운동이란	6
2.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7
3.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7
4.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	7
5.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8



II 기부행위 관련 위반사례

01 기부행위의 상시제한

1. 기부행위란	16
2. 기부행위 제한기간	17
3.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내용	17
4.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18

02 의례적행위 관련

1. 친족의 경조사에 축 · 부의금품 제공	22
2. 경조사 담례품 제공	22
3.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에 회비 납부	22
4. 교회 · 시찰 등에 현금	23
5. 상근직원 결혼식 등에 축 · 부의금품 제공	23
6. 회사창립기념식 등에서 식사 등 제공	23
7. 소속 상근직원에게 선물 제공	24
8.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 제공	24
9. 공연·제작 등의 금품 제공	24
10. 체육대회 등에서 시상	25

03 구호적 · 자선적행위 관련

1.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26
2.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금품 제공	26

Contents |

3.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	27
4. 불우청소년 등에 대한 후원	27
5. 재해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 제공	27
6. 국가기관·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	27
7.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28
8. 근로청소년 대상 무료학교 운영	28

04 직무상·업무상행위 관련

1.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29
• 무료민원상담	29
• 전문직업인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무료민원 상담	29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30
• 소속 직원·효자·효부 등 포상행위	30
• 기관명의의 구호·자선행위	30
•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30
• 조례에 의한 포상 등 행위	31
• 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31
• 헬기기관 방문시 식사 등 제공	31
3. 기업활동	32
• 회사의 영업활동에 수반된 달력 등 배부	32
• 영업활동에 부기한 무료강좌 실시	32

III 선전물 배부·첩부 등 관련 위반사례

01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관련

1. 행사고지 명목의 현수막 게시 등	38
2. 기념행사 등 축하 현수막 게시	38
3. 어깨띠 착용	39

02 인쇄물 배부 관련

1. 사무소개소 등 안내고지	40
2. 인사장 발송	40
3. 축전·축하카드 등 발송	41
4. 기관지·사보·반상회보 등 이용 선전	42
5. 동창회보·친목단체의 회보 이용 선전	42



IV 정당활동 관련 위반사례

01 집회 · 행사개최 관련

1. 정당행사에 일반선거구민 참석	46
2. 공개장소에서의 개최	46
3. 연예행사 · 체육행사 등 개최	47
4. 대민자원봉사활동	47

02 금품 · 음식물 제공 관련

1. 당직자회의식 식사 등 제공	48
2. 정당 간부회의식 식사 등 제공	49
3. 상근간부 등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품 제공 등	49
4. 선사무소 등 방문자에게 다과 등 제공	49
5. 정당대표자의 모범 · 우수당원 표창	49
6. 정책개발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등에게 식사제공	50
7. 창당대회 등에서 교재 등 제공	50
8. 하급당부 방문시 식사 제공	51
9. 후보자 등의 관할구역 방문시 식사 제공	51

03 선전물 배부 · 첨부 등 관련

1. 정당집회 · 행사고지 이용	53
· 창당 · 개편대회 등 고지이용 선전	53
· 정강 · 정책설명회 등 고지이용 선전	54
· 자연보호활동 등 행사관련 현수막 게시	54

2. 일반선거구민 대상 홍보활동	55
· 정강 · 정책 및 당원모집 등 광고이용 선전	55
· 정치적 주장표명 현수막 등 게시	55
· 일반선거구민에게 성명서 등 배포	56
· 정당기관지 배포	56
· 정당간부의 명함을 이용한 선전	57
· 인사장 발송	58
· 당내경선을 명목으로 한 선전	58
· 업무용자동차 이용 선전	58
· 정당간부의 특정지역 방문 지지호소	58
· 선거운동 목적 호별방문	59

V 집회 · 행사 관련 위반사례

01 각종 집회 · 모임 등 개최 관련

1.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배부 금지	64
2. 후원금 모금을 위한 집회개최 금지	64
3. 국회의원배 축구대회 개최	65
4. 단합대회 · 야유회 개최	65
5.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회의 개최	65
6. 출판기념회 개최	66
7. 시국강연회 · 세미나 · 학술대회 등 집회이용 선전	66

Contents |

02 주민접촉활동 관련

1. 각종 모임에서의 지지호소	67
2. 현안 청취 명목의 대화모임 개최	67
3. 행렬 등의 금지	68
4.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 착용 금지	68

03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

1.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69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69



VI 조직·단체 관련 위반사례

01 사조직과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이용	74
2. 사조직의 설립	75
• 연구소·신약회 등 설립·설치	75
•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	76
3. 기존 조직의 사조직화 또는 선거에 이용	76
4. 조직의 선전행위	77

02 정당·후보자가 설립한 기관·단체의 선전활동

1. 민원상담, 교양강좌 고지	78
2. 활동내용 선전	79

03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 감시활동 등 금지

80

0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1. 후보자 추대명목으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81
2.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81

VII 사이버 · 여론조사 · 방송 · 신문이용 위반사례

01 인터넷(선거 UCC율) 관련

1. UCC란	86
2. 선거법상 규제되는 '선거 UCC'	86
3. '선거 UCC'의 기간제한	87
4.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87
5. 사이트 유형별 운용기준	88
6. 기타 인터넷 관련	92

02 전화 관련

1. 전화이용 선거운동	97
2. 정당행사 고지 등	98
3. 핸드폰 문자 · 음성메시지 발송	98
4. 후보자 흥보음악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	98
5. 후보자 음성벨소리 등 이용	99
6. 선거운동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99

03 여론조사 이용

1. 특정 정당 ·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100
2. 피조사자에게 응답강요 및 의사왜곡행위	101

3. 시행성조장 방법의 조시행위	101
4. 피조사자의 성명공개행위	101
5. 기타 여론조사이용 선전행위	101

04 방송 · 신문 · 잡지 이용 관련

1. 광고이용 선전	103
2. 신문 · 잡지 등 통상적 방법 외의 발행 · 배부	104

VIII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관련 위반사례

01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금지취지	108
2. 금지대상 공무원 등	108

02 기간별 금지행위

1. 상시 금지되는 행위	110
2.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111
3.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114

IX 정치자금 관련 위반사례

01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등 금지

1. 정치자금이란	118
2. 정치자금의 종류	119
3. 주요 제한·금지사항	120

02 공천현금 등 수수·당비대납 관련

1. 공천현금 수수	123
2. 당내경선 등에서의 금품 등 제공	123
3. 당비대납	124

03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

1. 입후보예정자 소속단체에서 정치자금 제공	126
2.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 제공	126
3. 단체의 로비자금을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사용	127
4. 제3자의 정치자금 부담	127

04 법인·기업체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관련

1. 법인의 업무추진비로 후원금 납부	128
2. 법인자금을 임원명의로 기부	128
3. 법인자금으로 거액의 당비 납부	129

05 후원금 모금 또는 기부의 알선 관련

1. 개인·단체 또는 후원회 등록전의 정치자금 모금·기부	130
2. 법인이 공개적으로 정치자금 모금·기부	130
3.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 알선	131
4. 회사 임원의 정치자금 기부 알선	131

06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사무 관련

1.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불법지출	132
2. 예금계좌외 지출	133
3. 축소·누락 등 허위보고	133

X 부록

01 기간별 주요제한·금지사항

138

02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45

03 색인

150

I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0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02 사전선거운동



Made  KOREA



0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 등록 (§60의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전 120일('07. 12. 11)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때부터 예비후보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60의3)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명함배부

예비후보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흥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종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아래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같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고,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1. 선박 · 여객자동차 · 열차 · 전동차 ·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지하철역 구내 포함)
2. 병원 · 종교시설 · 극장의 안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유의사항 : 관련 p. 94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음)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신고한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08. 3. 24)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02

사전선거운동

1. 사전선거운동이란 (§254)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등록기간은 2008. 3. 25~3. 26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 27~4. 8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이 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2.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되므로 모든 후보자가 후보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됩니다.

4.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

■ 사전선거운동 단계에서는 설사 본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는 다른 목적 즉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행위, 의례적·사교적행위 등의 형태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찍어 달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사회상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즉 통상적인 정당활동 · 직무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위 목적의 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입후보와 무관하게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 행해지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임박하여 통상적인 방법 · 범위 · 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전 선거운동의 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그 사례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별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사전선거운동 사례는 그 행위의 내용이 기부행위, 선전물 배부 · 첨부 등 대부분 이 사례집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행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사례에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58①단서)

계모임 · 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얘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런 얘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 의사의 표시에 해당됩니다.

입후보 준비행위 (§58①단서)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 등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선거구민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정당의 당헌 · 당규 또는 선거법에 따라 전자우편 · 홍보물 등을 이용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거나 받은 때와 당내경선과정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주거나 달라고 하거나 받은 때에는 선거법(§57의5, §230)과 정치자금법(§32)에 위반됩니다.

선거운동 준비행위 (§58①단서)

- 선거사무장 내정자 등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의 임무 등을 부여하는 행위
- 선전벽보 · 선거공보 등 선전물을 미리 준비하고 연설원고 등의 집필을 의뢰하는 행위 등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내부적 · 절차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58①단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 · 현수막을 배부 또는 설치하거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집회 · 캠페인 · 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법(§90, §93, §254등)에 위반됩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 (§58①단서)

-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
-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 · 선전을 위한 활동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일반선거구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 · 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도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제한 · 금지됩니다.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111, §112② 등)

- 입후보예정자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



외형상 직무행위 또는 업무행위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례적 · 사교상의 행위

공적 ·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합리적 범위안에서의 의례적 · 사교적 행위



외형상 의례적 · 사교적 행위라도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대법원 판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사례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직한 사조직인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아침운동 등을 나온 선거구민을 상대로 인지도 제고 및 지지호소 발언을 한 경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 입후보예정자의 사무실에 지역부인회 지회장 등을 데리고 가서 입후보예정자의 처에게 소개시켜 주고, 입후보예정자의 처가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경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178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경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연구소를 설치한 후 그 구성원들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고, 선거구민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를 호소한 경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 동일한 날짜에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이 다수 참석한 수개의 모임에 잇달아 참석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경우(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604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한 경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 통상의 여론조사나 의정활동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4183 판결)

II

기부행위 관련 위반사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로 허용되어 작성·배부되는 전입안내문에 전입환경 글귀를 게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성명, 사진을 덧붙인 경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792 판결)
-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피교육생으로서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경우(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 01 기부행위의 상시제한
- 02 의례적행위 관련
- 03 구호적·자선적행위 관련
- 04 직무상·업무상행위 관련





01

기부행위의 상시제한

1. 기부행위란 (§112)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도 포함되고,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그 참여자 전원이 선거구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 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기부행위 제한기간 : 상시제한

3. 주체별 기부 행위 제한내용

주체별	제한기간	제한내용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상 시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금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선거기간전	당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금지
	선거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이라 함은

-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을 말합니다.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라 함은

- 후보자 또는 그의 가족이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국회의원후원회 등)를 말합니다.

◆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

4.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116)

금지이유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누구든지



선거권 유무, 개인·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금지대상자 (요구하는 행위의 상대방)

- 가) 정당·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 나) 후보자나 그 가족
- 다) 선거사무관계자
- 라)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
- 마) 위 가) 내지 라)의 제3자(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

금지행위

누구든지 위 「금지대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금지대상자」에게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처벌

- 가)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257②)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상한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261)



4,000원짜리 자장면을 제공받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물품 · 음식물 · 서적 ·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 입당의 대가로 금전 · 물품 ·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출판기념회 ·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 대담 · 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예정자)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 · 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 · 물품 ·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국회의원 · 지방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예정자)와 그 배우자(이하 “국회의원 등” 이라 함)로부터 야유회 · 관광모임 · 체육대회 ·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 · 물품 ·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관훈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죽의 · 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200만원)



02

의례적행위 관련

◆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식사류의 음식물

1인에 제공하는 음식물로써 다과 · 떡 · 김밥 등 다과류를 포함하여 식사용으로 제공되는 7,000원 이하의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 다과류의 음식물

1인에 제공하는 음식물로써 주류와 식사류를 제외한 다과 · 빵 · 떡 · 김밥 · 음료 등 간식용으로 제공되는 3,000원 이하의 음식물을 말합니다.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온천장 · 관광지 또는 유통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의 접대행위는 기부행위로 봅니다.

1. 친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친족외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113)에 위반됩니다.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2. 경조사 담례품 제공

법 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음식물 또는 담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회갑 등 60세 이상의 수연이나 은훈식·금훈식·회훈례에 참석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에 회비 납부

후보자 등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친목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4. 교회·사찰 등에 현금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현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현금은 할 수 없습니다.

5. 상근직원 결혼식 등에 축·부의금품 제공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소속 상근직원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아래 7.에서도 같습니다.

6. 회사창립기념식 등에서 식사 등 제공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내의 내빈 등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거나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쌈 값의 기념품을 주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7. 소속 상근직원에게 선물 제공

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 · 설 · 추석 · 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 · 단체 · 시설의 명의로 주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8.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 제공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 시설의 개소 · 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 분향식, 산하기관 · 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 · 합당대회 · 후보자선출대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 · 화분 · 기념품을 주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9. 공익재단 등의 금품 제공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전 4년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일전 120일('07. 12. 11)부터 선거일('08. 4. 9)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 · 방법 등을 확대 · 변경하거나, 후보자(예정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예정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10. 체육대회 등에서 시상

읍 · 면 · 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07. 12. 11)부터 선거일('08. 4. 9)까지 후보자(예정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선거구민이 참석하거나 선거구안에서 개최되는 주민체육대회 · 동문체육대회 · 고유축제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03

구호적 · 자선적행위 관련

1.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의 예시

- 장애인복지시설 : 재활시설, 요양시설, 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아동복지시설 :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선도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지원자원시설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

2.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금품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3.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4. 불우청소년 등에 대한 후원

자선 · 구호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 · 법인을 통하여 소년 · 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 · 구호금품을 주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5. 재해구호기관 · 단체에 구호금품 제공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 · 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6. 국가기관 · 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 ·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돋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제공하는 물품(포장지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소속 정당명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7.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선거구민, 일반당원 등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8. 근로청소년 대상 무료학교 운영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04

직무상·업무상행위 관련

1.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무료민원상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당해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민원상담 행위는 무방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하거나 변호사 기타 전문직업인을 당사 등에 배치하여 민원상담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문직업인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무료민원 상담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하는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효자·효부 등 포상행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을 포상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을 포상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기관명의의 구호·자선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는 무방합니다.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무방합니다.



법 §86③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08. 2. 9)부터 선거일(4. 9)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래 항목에서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이외의 자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수여가 불가합니다. 아래 「조례에 의한 포상 등 행위」에서도 같습니다.

조례에 의한 포상 등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무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관련 기간별 금지행위 : 관련 p. 110

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하급기관 방문시 식사 등 제공

선거일전 60일('08. 2. 9)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 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다과류)의 음식물을 주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공공기관의 범위

- 정부투자기관
- 한국은행
- 「농업 협동조합법」·「수산 업협동조합법」·「산림 조합법」
 - 「업연 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기업활동

회사의 영업활동에 수반된 달력 등 배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명시된 것 제외)을 회사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영업활동에 부가한 무료강좌 실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범위안의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기부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기부행위로 인정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른 현금의 방법을 벗어나 지방선거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달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를 찾아가 담임목사의 서재에서 은밀하게 부동산 처분에 대한 십일조 명목으로 1억원을 현금(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 2636 판결)
-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야유회 경비를 부담(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 7360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에 대비하여 상당한 득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직능단체 임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향수를 선물(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 6653 판결)
- 정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공직선거에서 도와줄 사람들 20명의 모임을 직접 주최하여 지지를 부탁하며 3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 3570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윷놀이대회 및 하계수련회 행사에 금품 제공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1100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부녀회의 노인회원 관광행사의 출발지에 찾아가 부녀회장에게 15,000원을 찬조(대법원 1999. 6. 7. 선고 99도1690 판결)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기존 인원에 2배나 많은 인원을 초청하고, 세미나 장소를 쇼·공연·목욕 등의 위락이 제공되는 건물 내에서 개최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대접, 위락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16 판결)
- 농협조합장인 후보자가 농협에 노인대학을 개설하고 조합경비 180만원으로 노인대학생들에게 민속촌 관광을 시켜주면서 출발장소에 나가 노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수료식장에서도 인사(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20 판결)

기부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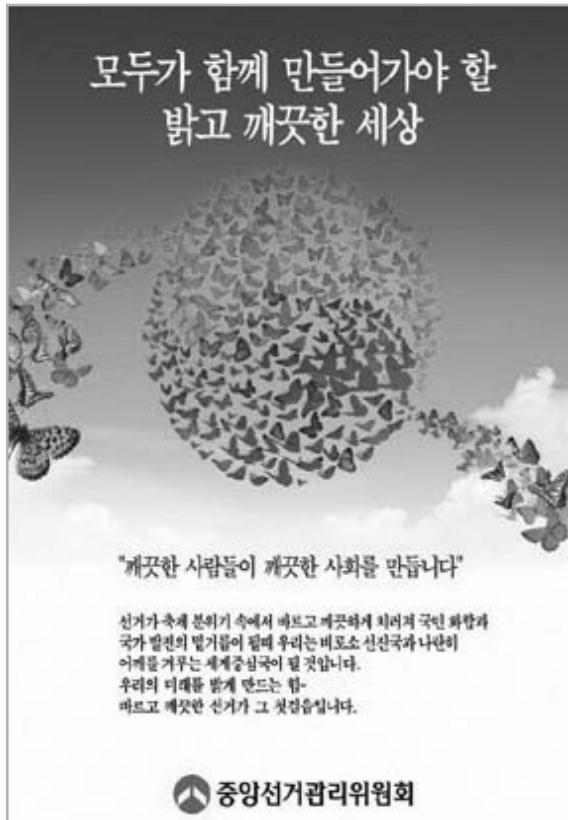
- 입후보예정자가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대금 56,000원을 계산(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923 판결)
-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 제공(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2971 판결)
- 선거를 도와줄 사람으로 소개받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행위,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대표이사 재직경력이 있는 후보예정자가 선거구내 교회 4곳을 찾아가 신앙간증을 하거나 예배를 보고 5만원 내지 10만원을 현금 (대법원 1998. 12. 12 선고 98도2527 판결)
- 가스충전소를 경영하는 후보자가 구정전 택시기사들에게 시가 3,500원 상당의 선물세트 배포(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 줄어 준비중인 어선에 친지나 이웃들이 풍어를 기원하는 뜻으로 술을 배에 실어주는 지역 풍습에 따라 후보예정자가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언행없이 어선 3척에 맥주 각 1박스씩을 실어 준 행위.(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85 판결)

III

선전물 배부·첩부 등 관련 위반사례

Poster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밝고 깨끗한 세상



01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관련

02 인쇄물 배부 관련



Made KOREA

01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관련



1. 행사고지 명목의 현수막 게시 등

시국강연회 · 세미나 · 학술대회 · 등반대회 · 자연보호활동 등 각종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의 직명 ·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90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 · 문화 · 체육 · 예술 · 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기념행사 등 축하 현수막 게시

민속절 · 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 · 이전 기타 관계 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 · 기관 · 단체 · 시설이

정당명 또는 후보자의 직명 ·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90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정당 · 기관 · 단체 · 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대표자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 현판 또는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에 설치 ·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어깨띠 착용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 · 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68)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마다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20인 이내(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더라도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입니다.



상기의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02

인쇄물 배부 관련

1. 사무소개소 등 안내고지

사무소 · 영업소 등의 개소 · 이전 기타 행사고지를 명목으로 초청장 · 안내장 등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표시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행사의 내용과 목적에 맞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초청장 · 안내장 등을 거래처 · 유관기관 · 단체 등에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인사장 발송

후보자, 정당의 대표자 · 간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인사장을 보냄에 있어 의례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당원 모두에게 발송하는 행위(E-mail 포함)는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3. 축전 · 축하카드 등 발송

평소 친교가 없는 학생 · 학부모, 선거구민 등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생일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선전물 배부 · 첨부 관련 대법원 판례

4. 기관지 · 사보 · 반상회보 등 이용 선전

각급기관 · 단체의 기관지 · 사보, 반상회보 등에 정당 · 후보자의 업적을 부각시키거나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정당 · 후보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선전하는 행위는 법(§93, §95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5. 동창회보 · 친목단체의 회보 이용 선전

각종 동창회 ·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후보자의 지지 · 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법(§93, §95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후보예정자 성명과 지지 호소내용이 포함된 연하장 발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성명과 “병술년은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한 것은 법 제93조에 위반된다고 판시(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선팅지를 이용한 선거사무소 간판 게시

선거준비사무소 유리창에 선팅지를 이용하여 가로 20m, 세로 1m 및 가로 8m, 세로 1m 규격의 '○○○ 선거사무소'라는 문구를 붙인 것은 선거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표지로서 간판에 해당된다고 판시(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희망돼지’라는 돼지저금통은 광고물 또는 선전물에 해당

돼지저금통의 본래 용도가 가정 등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는

IV

정당활동 관련 위반사례

장소에 비치되어 돈을 모으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배부한 이름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의 돼지저금통은 법 제90조의 광고물 또는 제256조 제1항제2호 아목의 선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242판결)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편향기사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지역신문에 특정인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76 판결)

01 집회 · 행사개최 관련

02 금품 · 음식물 제공 관련

03 선전물 배부 · 첨부 등 관련





01

집회 · 행사개최 관련

1. 정당행사에 일반선거구민 참석

창당대회 등 정당 집회에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는 법(§140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창당 · 개편대회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내빈을 참석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당원 참석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고 참석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가 참석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공개장소에서의 개최

정당 집회를 일반선거구민이 다수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공 광장 · 도로 등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위는 법(§140, §141)에 위반됩니다.

정당집회 개최의 제한

- ◆ 선거일전 120일('07. 12. 11)부터 개최되는 창당 · 합당 ·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합니다.
- ◆ 당원집회 · 교육
 - 선거일전 30일('08. 3. 10)부터 선거일(4. 9)까지 개최가 금지됩니다.
 - 선거일전 31일까지 개최하는 경우
 -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 · 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합니다.

3. 연예행사 · 체육행사 등 개최

정당 · 후보자, 후보자가 소속한 기관 · 단체 · 회사 등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예행사 · 체육대회 · 민속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103, §113, §114, §254)에 위반됩니다.

4. 대민자원봉사활동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 · 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02

금품·음식물 제공 관련

1. 당직자회의시 식사 등 제공

정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7,000원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 행위는 불가합니다.

당직자회의란

-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는 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는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2. 정당 간부 회의시 식사 등 제공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주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3. 상근간부 등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 제공 등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시·도당이상의 각급당부의 대표자나 상근간부·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4. 선거사무소 등 방문자에게 다과 등 제공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000원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5. 정당대표자의 모범·우수당원 표창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6. 정책개발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등에게 식사제공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7. 창당대회 등에서 교재 등 제공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주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 개편대회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당규상의 조직 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 등 집회를 말합니다.

◆ 후보자선출대회(당내경선)란

정당의 각급 당부가 공직선거의 당해 정당주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법 §57의2(당내 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합니다.

8. 하급당부 방문시 식사 제공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주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9. 후보자 등의 관할구역 방문시 식사 제공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7,000원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함께 다니는 자」에 포함되는 범위 및 인원

◆ 범위

- 후보자의 가족 외에 보좌관 등 수행원
- 정당의 간부, 선거사무관계자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보자 : 각 10인

※ 정당행사와 관련한 기부행위의 범위

행사별	참석대상	허용사례	금지사례
- 청당·합당·개편·후보자 선출대회	- 소속당원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내빈	- 교재기타 정당의 홍보안내물 - 쌈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 마스코트	원쪽 허용사례 외의 금품 등을 주는 행위 (선물·기념품 포함)
-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당원집회	- 소속당원		
※ 선거일전 30일 ('08. 3. 10)부터 선거일(4. 9)까지는 개최금지			
- 당직자회의 ※ 언제든지 개최 가능하니, 정당의 대표자가 참석 하여야 함.	- 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 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 배수에 상당 하는 상위직의 간부 -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 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 하는 상위직의 간부	- 식사류의 음식물 - 교재기타 정당의 홍보안내물 - 쌈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 마스코트	원쪽 허용사례 외의 금품 등을 주는 행위 (선물·기념품 포함)
- 당무회의 ※ 언제든지 개최 가능	- 각급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		

03

선전물 배부·첩부 등 관련



1. 정당집회·행사고지 이용

청당·개편대회 등 고지이용 선전

-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당원집회를 고지하는 행위는 법(§90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통집회장소에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당부 명의로 설치·계시하거나 정당의 각급당부의 당사에 고지현수막을 계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초청장에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일반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청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주최당부 명의로 당원이 아닌 내빈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강·정책설명회 등 고지이용 선전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설명회 등을 고지하는 행위는 법(§90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정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평가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당부명으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단체·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연보호활동 등 행사관련 현수막 게시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표시한 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법(§90, §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일반선거구민 대상 홍보활동

정강·정책 및 당원모집 등 광고이용 선전

정강·정책 등의 선전 및 당원모집, 당비모금 등의 광고에 있어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선거일전 90일('08. 1. 10)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3. 26)까지 정당의 중앙당만이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시·도당이나 입후보예정자는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주장표명 현수막 등 게시

정당이 정치적 주장표명 등을 명목으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직·성명 또는 사진 등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90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정당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의 사진 또는 그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불가하며, 게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거기간 중에는 4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선거구민에게 성명서 등 배포

정당이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성명서·해명서 등을 유인 또는 복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정강·정책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당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언론기관에 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기관지 배포

정당기관지를 일반선거구민에게 배포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첨부, 게시, 살포 또는 민원실, 마을회관, 아파트 입구 등에 비치하는 행위는 법(§95, §139)에 위반됩니다.

선거기간중 당보·홍보물 발행·배부제한

◆ 정강·정책홍보물

- 정당의 중앙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정강·정책홍보물 1종을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배부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정책공약집

-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정책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당사·정당 선거사무소,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정당기관지

- 정당의 중앙당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발행·배부하여야 하며 발행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배부전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은 게재할 수 있으나 기타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정당간부의 명함을 이용한 선전

정당의 간부 등이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의 직책·성명 등을 함께 게재하여 인사시 교부하는 행위는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인사장 발송

입당·탈당, 후보공천사실 등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장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당내경선을 명목으로 한 선전

입후보예정자가 당내 경선에서의 지지호소 등을 담은 선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흥보물을 1회에 한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업무용자동차 이용 선전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법(§90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간부의 특정지역 방문 지지호소

정당간부가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기자회견이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254)에 위반됩니다.

선거운동 목적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는 법(§106)에 위반됩니다.



선거기간중에는 당원모집, 입당원서 배부, 공개장소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이 금지됩니다.



정당활동 관련 대법원 판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내빈 초청

창당대회 초청장 약 1,119장 가량을 당원이 아닌 동창생 또는 군민회 회원 등에게 발송한 후 창당대회를 개최한 이상, 설령 그 창당대회에는 당원만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140조 (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에 위반된다고 판시(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지역신문에 신년광고 등 게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역신문에 정당의 명칭과 국회의원 또는 지구당 위원장의 이름과 사진을 부각하고, 정강·정책구호·홍보내용 등을 포함하는 신년사와 신년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배포한 것은 법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에 위반된다고 판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172 판결)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지구당 당원들에게 당원교육을 함께 있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홍보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책자형 선거홍보물을 5,000부를 교육자료 명목으로 배포하고,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전뉴스창간준비 1, 2, 3호를 당보 명목으로 지역구 유권자에게 우편발송 하였는바 배포된 책자 및 우송된 지구당보의 내용, 배포된 시기 및 방법과 배포의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거홍보용 책자 및 지구당보의 배포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2. 1. 22. 선고 대법원 2001도822 판결)

■ 정당이 당원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행사의 실제 내용에 연수나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오로지 자기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관광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 903 판결)

V

집회 · 행사 관련 위반사례

Poster

금품수수 없는 깨끗한 선거가 밝은 정치를 ...



01 각종 집회 · 모임 등 개최 관련

02 주민접촉활동 관련

03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 관련



Made  KOREA

01

각종 집회·모임 등 개최 관련

1.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배부 금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일전 90일('08. 1. 10)부터 선거일(4. 9)까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111)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후원금 모금을 위한 집회개최 금지

후원회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14)

3. 국회의원배 축구대회 개최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축구대회를 개최하거나 다른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주최한 축구대회라도 국회의원 이름을 대회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254)에 위반됩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없는 단체 등이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온 “국회의원배 축구대회”를 선거기간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단합대회·야유회 개최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103)에 위반됩니다.

5.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회의 개최

선거기간중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103)

6. 출판기념회 개최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08. 1. 10)부터 선거일(4. 9)까지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103)

7. 시국강연회 · 세미나 · 학술대회 등 집회이용 선전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국강연회 · 세미나 · 학술대회 기타 각종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집회라도 그 집회에서 후보자의 지지 · 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103, §254)에 위반됩니다.



02 주민접촉활동 관련

1. 각종 모임에서의 지지호소

누구든지 각종 단체 · 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는 법(§254)에 위반됩니다.

2. 현안 청취 명목의 대화모임 개최

후보자 등이 특별한 현안없이 여론수렴의 명목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또는 순회하면서 선거구민과의 대화모임을 갖는 행위는 법(§254)에 위반됩니다.

3. 행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105)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4.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 착용 금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105)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03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

1.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 단체가 선거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법(§81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이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법(§81)에 위반됩니다.

- ◉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 : p. 70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나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들로 구성된 단체 및 그 연합단체는 그 설치근거 법령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집회 · 행사 관련 법원 판례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이들 조합의 중앙회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의정보고회장에서 제3자의 지지 발언

의정보고회장에서 지구당운영위원장이 축사를 하면서 “이스스 의원은 십여년 동안 ○○동 빌라에 전세로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의정활동을 열심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발언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50 판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시민단체가 특정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 · 불법유인물 배포,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27 판결)

VI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 소개 등

선거운동기간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운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1992. 10. 24. 선고 대구고법 92노533)



조직 · 단체 관련 위반사례

- 01 시조직과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 02 정당·후보자가 설립한 기관·단체의 선전활동
- 03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 감시활동 등 금지
- 0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01

사조직과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규제대상 사조직의 범위

선거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사조직이라 함은 연구소, 동우회, 후원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선거법상 허용된 것 이외의 일체의 조직·단체를 말합니다. 당초 설립 또는 활동목적이 변질되어 특정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이는 규제대상 사조직이 됩니다.

1.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이용

선거법 규정(§61)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법(§89)에 위반됩니다.



후보자가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그 조직의 목적과 활동범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은 선거구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망을 전국 또는 특정 선거구안에 광범위하게 구성(시·도, 구·시·군 또는 읍·면·동지부를 두거나 통·리·반 또는 자연부락마다 구성원을 확보하여 선거구민을 조직화하는 행위 등을 말함)하는 때에는 그 조직의 목적이나 활동여하에 따라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립이나 설치로 봅니다.

2. 사조직의 설립

연구소·산악회 등 설립·설치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산악회·향우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는 행위는 법(§87)에 위반됩니다.



일반 선거권자인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이·미용사 등 직능단체 회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직화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정치인 팬클럽 설립 · 활동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법(§87)에 위반됩니다.



정당 내부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에서의 활동이나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학술·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무방합니다.



3. 기존 조직의 사조직화 또는 선거에 이용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정당·후보자가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법(§89)에 위반됩니다.



당원여부를 불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권유하기 위하여 위촉장·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후보자가 대가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회원으로 입회토록 하는 행위는 법(§113)에 위반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대하여 후보자(그를 지지하는 자 포함)가 그의 지지를 부탁하거나 구성원을 시켜 그 단체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4. 조직의 선전행위

조직의 결성 또는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선전물에 후보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선전하거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성 활동을 하는 행위는 법(§93, §254)에 위반됩니다.



○○지역개발연구소 등의 개설을 알리면서 후보자의 직명 또는 성명 등을 게재한 선전물 등을 선거구내에 첨부·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선거구민인 그 구성원에게 후보자의 정견·업적을 연수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정견·경력·업적 등을 선전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02

정당·후보자가 설립한 기관·단체의 선전활동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07. 10. 12 ~ '08. 4. 9)

-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89②)

1. 민원상담, 교양강좌 고지

민원상담, 각종 교양강좌 등의 고지명목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게시·배포하는 행위는 법(§90, §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2. 활동내용 선전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지역발전연구소·향토발전 연구회 등 기관·단체·조직 등이 그 설립취지나 활동내용을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물을 첨부·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법(§89②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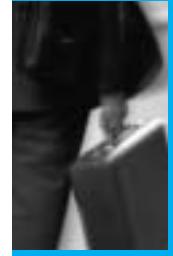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감시활동 등 금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부정감시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는 법(§10)에 위반됩니다.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10①)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0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1. 후보자 추대명목으로 서명 · 날인을 받는 행위

단체 등이 후보자인 그 구성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시민후보 추대 등의 명목으로 일반선거구민으로부터 지지 · 서명을 받는 행위는 법(§107)에 위반됩니다.

2.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와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87)

◉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 : p. 70

조직·단체관련 대법원 판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노동조합은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7 판결)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입후보예정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지역적인 연고가 없는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지난 선거시에 선거조직을 관리해 오던 자들과 공모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산악회 명칭, 간부진, 산악회원의 모집방법 등을 의논하고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주부들로 이루어진 발대식 참가자 약 500여명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산행을 하면서 산악회 발대식을 거행하였다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715 판결)

단체의 위법한 선거운동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된 단체라고 하여도 위법한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511 판결)

VII

선거운동을 위해 동창회 사무실 이용

후보자가 동창회 회장과 공모하여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후보자의 선전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로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는 한편 앞으로의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하였다면 위 동창회 사무실은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99도675)

사이버 · 여론조사 · 방송 · 신문이용 위반사례

- 01 인터넷(선거 UCC를) 관련
- 02 전화 관련
- 03 여론조사 이용
- 04 방송 · 신문 · 잡지 이용 관련





01

인터넷(선거 UCC물) 관련

1. UCC란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뜻합니다. 네이버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컨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편, 동영상 등)를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직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2. 선거법상 규제되는 ‘선거 UCC’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3. ‘선거 UCC’의 기간제한

- 선거운동에 이르는 ‘선거 UCC’는 게시자와 게시기간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에 게시·배포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 ’08. 3. 27 ~ 4. 8

- 19세 미만 등 선거권이 없는 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게시·배포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시·배포하는 것은 언제나 금지됩니다.

4.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 인터넷상의 토론판·자유게시판에서 토론·논쟁시 오프라인상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취지의 글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p. 8

- 그러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도 특정 사이트에서 또는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토론판·자유게시판 등에 계속하여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출마의 변,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합니다.

5. 사이트 유형별 운용기준

입후보예정자·후보자의 홈페이지

-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포함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제외)가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e-mail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홈페이지를 방문한 일반인(이하 ‘이용자’라 함)은 선거운동 기간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정당의 홈페이지

-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UCC들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이용자들이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흥보성 UCC들을 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특별히 선거에서의 지지권유와 같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포털사이트·일반단체의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기사를 게재하는 인터넷신문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돋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시]

- 청소년 단체 등에서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제시한 청소년관련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단체가 공명선거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 포털사이트·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법(§93, §113, §116,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 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UCC물을 삭제 할 수 없을 것이나, 인터넷실명확인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법에 따라 조치됩니다.

개인블로그 · 팬클럽의 홈페이지

■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들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들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습니다.

■ 개인블로그 · 팬클럽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신문기사 내용 전송은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복사 · 배부한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6. 기타 인터넷 관련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정보 전송

■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 · 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 선거구민이 입후보예정자가 관리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주소를 남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 · 운영자가 해당 자료를 당해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를 송부하면서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다음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82의5)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 제외, 이하 같음)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후보자정보 게시 등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단위로 후보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 이메일 서비스업체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준수사항은 지켜야 하며, 전자우편 전송대행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의 의뢰를 받아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135③)에 위반됩니다.

인터넷 광고 등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개인이나 법인 또는 등록여부 불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선거운동기간 중에 게재하거나, 동 인터넷언론사가 법 §82의 규정에 따라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를 광고하는 행위는 법(§82조의7, §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연예인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연예인이나 공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을 즐겨찾기로 설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선거운동기간전에 연예인이나 공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을 배너형태로 연결시키는 것은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URL 게시

포털 혹은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의 URL(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URL 제외)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기타 프로그램 이용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명함 자동생성프로그램(E-mail을 받은 수신자가 E-mail 제목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발송자의 명함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mail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준수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 미니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사용자가 특정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그 인터넷홈페이지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추후 간단한 조작만으로 사용자의 개인 컴퓨터에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방합니다.

■ 모바일 블로그(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부여된 특정 번호를 누르면 후보자 등의 블로그로 접속되는 프로그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방합니다.



특정 단어를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팬클럽홈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것은 법(§254)에 위반됩니다.



02

전화 관련

1. 전화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254)

■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번호 다이얼만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실제 전화통화는 선거사무원 등이 유권자와 1:1로 직접 통화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정당행사 고지 등

정당의 대표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소속 당원에게 정당행사를 고지하거나 정당행사에 참석한 소속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인사를 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3. 핸드폰 문자 · 음성메시지 발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 · 음성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 ·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254)

4. 후보자 홍보음악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5. 후보자 음성벨소리 등 이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후보자의 사진 및 기존 캐릭터를 활용한 핸드폰 캐릭터와 음성벨소리를 전화정보장치에 저장하여 두고 그 정보를 원하는 선거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법(§93, §109, §254)에 위반됩니다.

6. 선거운동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거나 선거일에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법(§109, §254)에 위반됩니다.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음성 ·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03

여론조사 이용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08. 2. 9)부터 선거일(4. 9)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 선거일전 6일부터('08. 4. 3)부터 선거일(4. 9)의 투표마감 시각(18:00)까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우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는 법(§108)에 위반됩니다.

2. 피조사자에게 응답강요 및 의사왜곡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법(§108)에 위반됩니다.

3. 사행성조장 방법의 조사행위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을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등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법(§108)에 위반됩니다.

4. 피조사자의 성명공개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108)에 위반됩니다.

5. 기타 여론조사이용 선전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108, §254)에 위반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04 방송·신문·잡지 이용 관련

1. 광고이용 선전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 광고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후보자의 성명·사진·경력·
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창간 축하광고 이용 선전

신문·잡지 등의 창간 축하를 명목으로 후보자의 사진·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법(§93 또는 §254)에 위반됩니다.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직·성명을 나타내어
의례적인 축하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자를 부각시켜 광고하거나 특정 후보자 1인이 또는 하나의
정당에 소속된 다수의 후보자가 그 직명과 성명을 게재하여 창간
축하광고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08. 1. 10)부터 선거일(4. 9)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신문·잡지 등 통상적 방법 외의 발행·배부

정당·후보자에 대한 호의 또는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기관지 등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확대 발행·배부하거나 이를 구입 또는 발췌·복사하여 배부하는 등 통상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하는 행위는 법(§95)에 위반됩니다.

사이버·여론조사 등 관련 대법원 판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경선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시 유권자 1,000여명에게 ‘△△당 경선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제93조에 위반한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게시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3호의 규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신의 선거운동행위를 법률의 개정(2004. 3. 12)을 통하여 새롭게 허용하는 취지일 뿐이고, 후보자 등이 아닌 일반국민이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는 법 제93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VIII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관련 위반사례

- 01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02 기간별 금지행위

회사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

회사의 광고를 하면서 회사의 재정 건설 등을 홍보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광고 내용 중 ‘지역구’와 ‘3’자 만이 유독 다른 글자 보다 훨씬 크고 적색으로 되어 있고, ‘△△3동’, ‘30년간’이라는 표현마저 ‘3’만 크게 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광고를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광고를 계속 게재한 사안에 대하여, 위 광고는 지역구에 출마한 기호 3번 후보자를 연상시켜 그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637 판결)

컴퓨터 자동송신장치 전화 이용

컴퓨터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하여 “안녕하십니까. △△당 국회의원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내용의 육성을 선거구민에게 송신하여 수신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01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금지취지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공무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소속직원들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은 선거의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며 주관적인 의사로서의 선거운동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금지대상 공무원 등

「공무원 등」이라 함은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 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각급당부의 대표자 겸직여부에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02

기간별 금지행위

1. 상시 금지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각종 기공 · 준공식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 · 후보자를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친장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 전략에 관한 정보 ·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직능단체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 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 특정 정당에 대하여 편파적인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08. 2. 9 ~ 4. 9)

정당의 정강 · 정책 등 홍보 · 선전

정당의 정강 · 정책과 주의 ·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 선전하는 행위는 법(§86)에 위반됩니다.

각종 정치행사 참석 · 선거사무소 등 방문

창당대회 · 합당대회 ·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법(§86)에 위반됩니다.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교양강좌 등 행사 개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 제한을 받지 않는 행위는 개최 ·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 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 · 면 · 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통 · 리 ·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천재 · 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선거일전 60일('08. 2. 9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86① 참조)으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08. 3. 27 ~ 4. 9)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관련 대법원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기간중 직접 세미나 경비 지원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전에 지방의회의원 전원의 세미나 출장을 앞두고 의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고 그 기회에 세미나 지원경비 명목으로 예산으로 책정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092 판결)

IX

정치자금 관련 위반사례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

공무원이 후보자의 홍보물 파일의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하거나 후보자의 연설문·인터뷰자료·선거공약·토론회 자료·보도자료·당선 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건네 준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고 판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008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입후보예정자의 업적 홍보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등을 수록한 책자 200여권을 구청 관내 동사무소 및 구청 각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지구당의 연말불우이웃돕기 사실을 구청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써 미담 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이었다 하여 업적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 01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등 금지
- 02 공천한금 등 수수·당비대납 관련
- 03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
- 04 법인·기업체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관련
- 05 후원금 모금 또는 기부의 일선 관련
- 06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사무 관련



01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등 금지



「기부」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기부로 봅니다.

1. 정치자금이란(정치자금법 §3)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과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준위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로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 대통령선 거경선 후보자, 당대 표경 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시·도지사후보자만이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으며,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가 아닌 유사기구를 설치·운영시 정치자금법(§45②)에 위반됩니다.

2. 정치자금의 종류(정치자금법 §3)

당비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금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보조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정당의 부대수입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을 말합니다.

3. 주요 제한 · 금지사항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조달 금지 (정치자금법§2, §45)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정치자금부정 수수죄로 처벌되고 그 제공된 금품 등을 몰수됩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는 무방합니다.

사적경비 · 부정한 용도의 지출 금지 (정치자금법§2)

-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1회 5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공직선거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은 20만원)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의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출이 제한되는 사적경비

- 가계의 지원 · 보조
-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 향우회 · 동창회 · 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정치자금의 기부제한 (정치자금법§31~§33)

■ 기부의 제한

외국인,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특정 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말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지방의회 의장 · 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 · 부의장, 교육감 ·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 국가 · 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의 의미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02

공천현금 등 수수 · 당비대납 관련

1. 공천 현금 수수

정당공천 또는 경선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거나, 공천을 대가로 정당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특별당비 명목의 거액의 당비 또는 후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2, §45②)에 위반됩니다.

2. 당내경선 등에서의 금품 등 제공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 관련

- 경선선거인에게 경선후보자를 선전하면서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와
-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에게 경선일에 경선장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경선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의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설·추석 명절을 전·후로 활동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57의5)에 위반됩니다.

정당의 대표자 등의 선출 관련

- 정당 대표 경선에서 후보자 명의로 전국대의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 정당 대표 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지지·부탁하며 금전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당법(§50)에 위반됩니다.

3. 당비 대납

- 입후보예정자가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자의 예금계좌에서 당비가 자동납부 되도록 하게 한 후 본인이 입당원서를 작성한 자에게 당비를 보전하는 행위와
- 입후보예정자가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만 징구하고 본인이 그 입당원서 작성자의 당비를 현금으로 대납하는 행위와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없이 정당가입을 강요하거나 입당과정에서 입당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는 선거법(§113~115), 정당법(§54), 정치자금법(§48)에 위반됩니다.



03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

1. 입후보예정자 소속단체에서 정치자금 제공

입후보예정자가 소속한 단체(동창회 등)에서 소속회원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지원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단체의 장이 입후보 예정자에게 선거지원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1)에 위반됩니다.

2.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 제공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기금을 이용하여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1)에 위반됩니다.

3. 단체의 로비자금을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사용

단체의 기금운용 비리를 통해 조성한 자금 중 일부를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1)에 위반됩니다.

4. 제3자의 정치자금 부담

정치인이 사무소설치비를 제3자에게 부담시킨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예금계좌에서 인출, 사적경비로 사용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45)에 위반됩니다.

04

법인·기업체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관련

1. 법인의 업무추진비로 후원금 납부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법인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1)에 위반됩니다.

2. 법인자금을 임원명의로 기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대표자 및 임원에게 지급하고 대표자 및 임원이 그 돈을 자신들의 명의로 다수의 후원회에 분산하여 후원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1)에 위반됩니다.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3. 법인자금으로 거액의 당비 납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정당에 제공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구성원을 특정 정당에 입당시킨 후 그 구성원 명의로 거액의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1)에 위반됩니다.

불법후원금의 반환(정치자금법 §18)

-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및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05

후원금 모금 또는 기부의 알선 관련

1. 개인 · 단체 또는 후원회 등록전의 정치자금 모금 · 기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는 개인이나 정치인 소속단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후원회 등록 전에 후원회의 모금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후원금을 모금 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1, §45)에 위반됩니다.

2. 법인이 공개적으로 정치자금 모금 · 기부

법인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원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 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1, §45)에 위반됩니다.

3.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 알선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2)에 위반됩니다.

4. 회사 임원의 정치자금 기부 알선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들이 회사와 관련 있는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3)에 위반됩니다.

06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사무 관련

1.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불법 지출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원회 경비를 지출하거나, 후원회의 지출경비를 후원회 예금계좌에서 지출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는 행위와



- 정당 정체통보물의 인쇄비를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카드로 지출 한 후 이를 정치자금으로 보전하거나, 정당의 사업부서에서 식대·간담회비 등을 당직자 개인카드로 일괄 지출하게 한 후 정치자금으로 보전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6, §47)에 위반됩니다.

2. 예금계좌외 지출

회계책임자가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35, §47, §49)에 위반됩니다.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통장은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3. 축소·누락 등 허위보고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입·지출 내역을 축소·누락(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하는 경우를 말함)·허위로 보고하는 행위와
- 정치자금을 실제 지출액보다 과다하게 지금 한 후 차액을 환급받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 국고보조금으로 당원집회시 기념품을 제작하여 당원들에게 배부하고는 당원교육용 교재를 인쇄·제공한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46, §49)에 위반됩니다.

정치자금 관련 법원 판례 및 현재 결정

불법후원금의 수수 책임 및 기수시기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7670 판결)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수행위 금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행위는 그 개별적 구체적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입법형식이 아니라면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방법으로 구성요건을 정할 이유가 충분하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자 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처벌된다는 점은 법률조항에 의해 명백하다고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4. 6. 24. 2004헌바16)

불법정치자금 수수내역 신고의무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적법·불법을 불문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라는 공익이 진술거부권이라는 사익보다 우월하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4헌비25)

X

부 록

Poster

깨끗한 정치후원금 우리 정치가 바른 길로 갑니다



01 기간별 주요제한 · 금지사항

02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03 색인



Made KOREA

01

기간별 주요제한 · 금지사항



1. 상시제한 주요 행위

- 기부행위의 제한 · 금지(§112)
- 야유회 · 관광 · 체육대회 · 등산대회 등 행사에 금품 등 제공 금지(§112)
- 죽의 · 부의금품 등의 제한(§112)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113)
- 사전선거운동 금지(§254② · ③)
- 공무원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①, 2, 3)
- 사조직 설립 · 설치금지(§87②)
-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89①)
- 신문 · 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 금지(§95)
- 허위논평 · 보도의 금지(§96)

-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110)

- 당원단합 · 수련 등 당원집회 개최장소, 고지제한(§141)



2008. 3. 10부터 4. 9까지는 당원집회 개최금지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230)

-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 교란 금지(§244)

- 허위사실 공표금지(§250)

2. 선거 일전 180일부터 선거 일까지 (2007. 10. 12 ~ 2008. 4. 9)

- 정당 · 후보자가 설립 · 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89②)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93①)

3. 선거 일전 120일부터 선거 일까지 (2007. 12. 11 ~ 2008. 4. 9)

창당 · 합당 · 개편 · 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140① · ②)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4.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2008. 1. 1 ~ 3. 26)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137의2①)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중에는 할 수 없습니다.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2008. 1. 10 ~ 3. 26)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137)

정당의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총 70회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중에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광고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중앙당외의 당부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6.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8. 1. 10 ~ 4. 9)

- 정당·후보자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93②)
-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103⑤)
-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111)

7.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8. 2. 9 ~ 4. 9)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8.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8. 3. 10 ~ 4. 9)

당원집회·당원교육 금지(§141①)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9. 선거기간 중 (2008. 3. 27 ~ 4. 9)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①4 · 5 · 6 · 7호)
 - 4호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5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6호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7호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 ·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금지(§87)
-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91)
- 저술 · 연예 ·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92)
- 방송 · 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94)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99)
- 녹음기 · 녹화기 등의 사용 금지(§100)
- 타연설회등의 금지(§101)
- 야간연설등의 제한(§102)
- 각종집회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금지(§103)
- 입당권유, 연설 · 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금지(§106)
- 서신 · 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109)
- 정강 · 정책의 신문광고 금지(§137)
- 정강 · 정책의 방송연설 금지(§137의2)

- 정강 · 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 · 배부제한(§138, §139)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금지(§144①)
- 당사계시 선전물 등의 제한(§145)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간판 · 현판 · 현수막을 모두 힙하여 4개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으며,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당해 당부명, 당해 당부의 대표자 성명은 게재할 수 있으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10.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2008. 4. 3 ~ 4. 9 18:00)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 · 인용보도 금지(§108①)
- ☞ 관련 : p. 100

11. 선거일 (2008. 4. 9)

-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59, §254①)
- 투표마감시각(18:00) 종료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167②, 241①)

12. 선거일후 담례금지 (§118)

13. 기타

- 인쇄물 · 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원 모집 금지(§62⑦)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모집시는 제외

-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 · 비방금지(§82의4②)
- 선거운동의 권유 · 약속을 위한 문서 등의 배부 · 징구 금지(§93③)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 제한(§98)
- 행렬 · 연호행위등 금지(§105)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 · 날인받는 행위 금지(§107)



02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 선거법 제261조 관련

(단위 : 만원)

처분대상행위	부과상한액	관련법조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에 간판 · 현판 ·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 · 게시하는 행위	100	§61⑥ §61의 2④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하는 행위	100	§63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 · 대담을 하는 행위	100	§79⑥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시 사회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소개 또는 연설 · 대담을 하거나 당일에 1회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행위	100	§79⑧
선전벽보등 선전인쇄물을 첨부한 자동차 또는 선박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100	§91④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 · 장소표지의 규격이나 수량을 위반하여 첨부 · 게시하거나 고지벽보 또는 장소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11②

(단위: 만원)			
처분대상행위	부과상한액	관련법조	
정강·정책홍보를 또는 정당기판지를 선거기간 중에 소속 당원에게 배부하기 전에 중앙위원회 또는 배부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38④ §139③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의 장소표지를 당해 집회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40④	
당원집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제외)를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 기관·단체 기타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개공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거나, 당원집회의 장소표지를 집회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41②·④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정당의 대표자·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면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법 제114조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 받는 행위	5,000	§113 ~ §116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관훈상제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5,000	§113, §116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200	§113, §116	
(단위: 만원)			
처분대상행위	부과상한액	관련법조	
정당의 당사 또는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의 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개시하는 행위	100	§145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하는 행위	200	§152①	
선거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제출의무를 해태하는 행위	200	§261③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 선전물 포함)이나 유사기관·시설 등을 발견하여 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	200	§271①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300	§272의 3③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직원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300	§272의 2④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272의 2④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첨부·개시 또는 설치한 자가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0	§276	

● 정치자금법 제49조 관련

(단위 : 만원)

처분대상행위	부과상한액	관련법조
선거비용과 관련, 회계책임자의 선임·변경·겸임 신고를 해태하는 행위	200	§34①,③ §35①
선거비용과 관련, 회계책임자의 선임·겸임 신고 시에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200	§34④
선거비용과 관련, 회계책임자의 변경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200	§35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 서명·날인(선거연락소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200	§40⑤

● 정치자금법 제51조 관련

(단위 : 만원)

처분대상행위	부과상한액	관련법조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교부를 해태하는 행위	300	§5 ①·② §17 ①·④
후원회의 사무소·연락소 또는 국회의원의 사무소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두는 행위	300	§9 ②·③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정치자금범죄 조사와 관련한 동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300	§52⑤
회계책임자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를 지체하는 행위	200	§35②
지출결의서나 구입·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200	§38②

(단위 : 만원)

처분대상행위	부과상한액	관련법조
신고·보고·신경을 해태하는 행위 - 후원회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신고 - 후원회의 후원금 기부내역보고 - 후원회의 존속결의에 따른 변경등록신청·해산신고 - 후원회의 헌병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 회계책임자의 선임·겸임 신고 - 회계책임자의변경신고 - 정당 등의 회계보고	100	§7① \$10③ \$19②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허위로 하는 행위	100	§7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100	§8①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7⑩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의 잔여재산 또는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의무를 해태하는 행위	100	§21① \$58①
2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우	100	§34②본문
보조금과 보조금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행위	100	§37①후단
회계보고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사본, 의견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와 인계·인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행위	100	§40④
정치자금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52⑤

03 색인

ㄱ

간판 2, 38, 39, 43, 56, 143, 145, 147

간행물 69, 103, 104

강연회 38, 54, 66, 112

개편대회 46, 47, 50, 53, 112, 146

결혼식 17, 23, 24, 138

경력 3, 8, 9, 35, 56, 57, 77, 89, 92, 103

경로당 26

경로행사 112

경조사 20, 22, 34, 49, 146

고유축제 25, 113

고지벽보 145

관광 20, 21, 34, 48, 51, 61, 83, 138

관혼상제 20, 22, 146

광고 43, 55, 60, 77, 79, 95, 103, 104, 106, 140, 141, 142, 144

공천현금 123

교양강좌 78, 112, 113

구호금품 26, 27, 28

구호사업 27, 30

금품 9, 18, 20, 22, 23, 24, 25, 26, 27, 28, 30, 31, 34, 49, 52, 108, 113, 114, 120, 123, 138, 142, 146

기념식 23, 24, 113

기념품 21, 23, 24, 52, 61, 133

기부행위 8, 16, 17, 18, 19, 21, 22, 34, 52, 113, 138

기업활동 32

공공기관 24, 27, 31, 32, 47, 146

경선후보자 58, 105, 118, 123, 124

ㄴ

녹화물 64

ㄷ

단체 14, 16, 17, 19, 20, 22, 23, 24, 27, 28, 30, 31, 32, 38, 39, 40, 42, 47, 49, 51, 54, 65, 67, 69, 70, 71, 74, 75, 76, 78, 79, 80, 81, 82, 89, 90, 91, 102, 109, 111, 112, 113, 114, 115, 118, 121, 122, 126, 127, 128, 130, 141, 142, 146

단합대회 65, 112

달력 32

당내경선 9, 50, 58, 123, 124

당보 56, 61

당비모금 55

당원교육 50, 60, 133, 141

당원연수 61, 112

당원집회 47, 50, 52, 53, 133, 139, 141, 146

당직자회의 48, 52

동문체육대회 25

동우회 74, 75

동창회 16, 22, 42, 70, 84, 121, 126

등반대회 38

□

마스코트 50, 52

마을회관 56

명함 3, 4, 57, 96

모임 8, 13, 16, 20, 33, 65, 67, 70, 76, 112, 121

물품 16, 19, 20, 23, 28, 104, 141, 146

민속경기대회 47

민원상담 29, 56, 78, 112

무료학교 28

모자 68

ㅂ

반상회보 42

방송 78, 103, 104, 140, 142, 144

배우자 3, 17, 20, 22, 23, 35, 39, 49, 68, 80, 146

배지 50, 52

부의금품 20, 22, 23, 49, 138, 146

불우이웃돕기 28, 116

비방 71, 87, 139, 144

人

사원체육대회 23

사이버 85, 105

사전선거운동 6, 7, 8, 9, 11, 12, 14, 44, 61, 71, 87, 88, 89, 91, 92, 138

사조직 12, 74, 75, 76, 83, 138

사진 3, 14, 32, 40, 55, 56, 57, 58, 60, 86, 91, 95, 99, 103, 104, 140, 141

사찰 23

산악회 12, 70, 74, 75, 83, 121

상시제한 17, 138

서명 9, 10, 71, 81, 144, 148

서명운동 10

선거대책기구 112, 147

선거비용 120, 127, 132, 148, 149

선거추진위원회 74

선물 21, 24, 28, 33, 35, 52, 61, 124

성당 23

수용보호시설 26

시국강연회 38, 66, 112

시설물 38, 53, 54, 55, 139, 144, 147

식사 13, 21, 23, 31, 33, 34, 35, 48, 49, 51, 52, 123, 124

식사류 21, 23, 31, 48, 49, 51, 52

신문 31, 44, 60, 78, 92, 103, 104, 138, 140, 142

선거운동정보 5, 92, 93, 94, 95, 96, 98

O

야유회 20, 33, 65, 138

어깨띠 39

여론조사 13, 100, 101, 102, 105, 141, 143

연구소 13, 74, 75, 77, 79

연두순시 31

연설회 71, 142

연예행사 47

연하장 43

예비후보자 2, 3, 4, 6, 25, 41, 51, 88, 92, 93, 95, 96, 118, 120

옷 68

위문활동 28

위촉장 77

유공자 23, 24, 27, 30, 113

유사기관 84, 138, 147

음식물 19, 20, 21, 22, 23, 28, 31, 48, 49, 50, 51, 52, 146

의연금품 26, 27, 28

의정활동보고 13, 20, 64, 141

인기투표 100

인사장 40, 58

인쇄물 3, 4, 40, 50, 52, 55, 64, 78, 144, 145, 147

인터넷 3, 4, 10, 29, 64, 86, 87, 89, 90, 91, 92, 93, 95, 96, 100, 105

인터넷홈페이지 3, 95, 96

입당원서 46, 59, 124, 143

S

자선사업 28, 30

집지 78, 103, 104, 138

저서 66, 141

전화(번호, 정보장치) 3, 13, 58, 64, 84, 94, 97, 98, 99, 106

정당기판지 56, 57, 143, 146

정당집회 47, 53

정당활동 7, 8, 10, 11, 60, 61, 89

제3자 17, 19, 71, 90, 119, 127, 146

조기축구회 74, 75

종친회 22, 71, 121

준공식 23, 24, 110

지방의원 17, 19, 20, 29, 40, 64, 108, 141, 146

지방자치단체장 14, 17, 19, 20, 31, 40, 109, 114, 115, 141

직능단체 33, 75, 111, 112

직무행위 7, 8, 11

집회 10, 20, 38, 46, 47, 50, 52, 53, 64, 65, 66, 71, 72, 133, 139, 141, 142, 146

정당선거사무소 17, 19, 20, 54, 57, 145

정보수신자 94

정치자금 10, 18, 64, 118, 119, 120, 121, 122, 123,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48, 149

ㅊ

창당대회 46, 50, 60, 112, 146
창당준비위원회 17, 146
창립기념식 23
체육행사 25, 47
초도순시 31
초청장 40, 53, 60
축사 64, 71
축전 41
축제 25, 113
축하카드 41
출판기념회 20, 66, 141
친목회(단체) 16, 22

ㅋ

캠페인 10
컴퓨터 4, 92, 96, 97, 98, 99, 106

ㅌ

통신 4, 78, 92, 94, 99, 144, 147
투표용지 100, 141, 147

ㅍ

포상 30, 31
포장지 28

ㅎ

학술대회 38, 66
합동결혼식 24
향우회 16, 22, 70, 74, 75, 120
허위사실 87, 139, 144
현금 23, 33, 35, 123
현수막 2, 10, 38, 39, 53, 54, 55, 56, 78, 143, 145, 147
현판 2, 38, 39, 54, 55, 56, 143, 145, 147
회사 17, 18, 23, 32, 35, 47, 106, 131, 146
후보자선출대회 24, 46, 47, 50, 53, 112, 139, 146
후원금 64, 118, 119, 123, 126, 128, 129, 130, 134, 149
후원회 18, 27, 64, 74, 118, 119, 128, 129, 130, 131, 132, 134, 147, 149
행렬 68, 144

ㄻ

UCC 86, 87, 89, 91, 92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

발 행 | 2008년 1월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TEL 503-1114(代)

디자인 | 다음커뮤니케이션즈 (02-325-6260)

인쇄 | 사회복지법인 너머 인쇄 (02-868-6854)
